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

제 출 자	고 성 군 수
제출연월일	2023. 7. 4.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보고

제출연월일: 2023. 7. 4.

제 출 자: 고 성 군 수

1. 보고이유

- 인구감소지역의 공동 발전 방향 모색과 효율적인 균형 발전 실현을 위한 협의체인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에 가입
- 협의회에서 정한 회칙에 대하여 군 의회에 보고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169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를 구성하려면 관계 지방자치단체 간의 협의에 따라 규약을 정하여 관계 지방의회에 각각 보고한 다음 고시하여야 한다.

3. 협의회 구성

- 명 칭: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 대 상: 89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 임 원: 13명(회장 1, 부회장 10, 간사 1, 서기 1)
 - 역 할: 인구감소지역 간 협력이 필요한 사항 논의·의결
 - 부담금: 협의회 총회에서 결정
- ※ 협의회 참가 현황: 인구감소지역 89개 지자체 가입

4. 회칙 주요내용

○ 목적, 명칭, 구성, 사무소, 기능, 조직, 임원선임 및 임기(제1조~ 제7조)

- 구성: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각 지방자치단체장

- 기능:

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②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상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재·규제등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역상생 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사항

④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⑤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

⑥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 임기: 회장, 부회장 1년(연임 가능),

○ 권리와 의무, 총회, 실무협의회, 회의사항, 의안 및 정족수 (제8조~제12조)

- 권리: 협의회 운영에 대한 의견 개진, 의결 참여, 안건 제출

- 의무: 부담금 납부

- 총회: 연 1회 정기회 소집

- 실무협의회: 의안 취합, 검토의견서 협의회 제출, 보고

○ 사무국, 사무국의 업무, 자문위원, 재원, 부담금, 사무의 인계, 회칙 개정, 보칙(제13조~제20조)

5. 향후 추진계획

- 2023. 7.: 협의회 회칙 제284회 임시회 안건 보고
- 2023. 7. 26.: 협의회 창립 총회 참석(군수님, 정부세종컨벤션센터)
 - 회칙 제정, 임원 선출, 창립선언문 채택, 부담금 결정 등
- 2023. 8.: 협의회 회칙 고시(의회 의결 이후)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회칙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69조의 규정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의 교류와 상생협력을 통하여 인구감소시대에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목표로 한다.

제2조(명칭) 본 협의회는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한다.

제3조(구성) ①협회의 회원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2조제9호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별지 제1호서식” 서식에 의한 참여동의서를 제출한 각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다.

②행정안전부 인구감소지역 지정주기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정 해제된 지방자치단체는 인구감소지역 지정이 해제됨과 동시에 회원자격이 자동소멸된다.

제4조(사무소) 협의회는 주된 사무소는 상임회장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다.

제5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특례·교류 협력에 관한 제도개선 사항
2.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상 인구유출에 대한 재정·세제·규제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7조 및 제22조에 따른 지역상생발전기금과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한 개선 사항
4.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접수와 고향사랑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개선사항
5. 인구감소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지방 간 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해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기관·단체와 협력 및 건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결의한 사항

제 2 장 조직 및 운영

- 제6조(조직)** ①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0명 이내, 간사 1명, 서기 1명을 둔다.
- ②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
- ③부회장은 광역 자치단체별로 회장이 선출되지 않은 기초 자치단체의 시장·군수·구청장에 한해 1명씩 선출한다.

- 제7조(임원선임 및 임기)** ①임원 선임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장과 부회장은 정기회에서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3. 간사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과장으로 한다.
 4. 서기는 간사가 지정하며, 간사를 보좌한다.
- ②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③지방자치단체장이 부득이한 사유발생시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회원으로 참석할 수 있으며, 심의와 의결권을 갖는다.

④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대행자는 「인구감소지역 지정고시」에 따른 광역 지방자치단체 순으로 한다.

제8조(권리와 의무) ①회원은 회장 및 부회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제5조에 관련된 의견을 개진하거나 안건을 제출할 수 있다.

③회원은 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④회원은 협의회 회칙을 준수하고, 협의회 활동에 협력하여야 한다.

⑤회원은 부담금을 소속 시·군·구의 예산에 계상하여 협의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총회 등) ①협의회 총회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협의회 회장은 연 1회 정기회를 소집한다.

②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회원의 10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임원과 협의하여 개최할 수 있다.

③부득이한 사유로 총회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임원회의에서 총회의 기능을 대행한다.

제10조(실무협의회) ①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실무협의회를 둔다.

②실무협의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된다.

③실무협의회장은 의안을 취합하고 검토의견서를 붙여 협의회에 제출하고 협의회 회의 시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실무협의회원은 협의회 임원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과 의안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

제11조(회의사항) ①총회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결정한다.

1.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선출 및 회원가입 승인에 관한 사항
3. 사업비의 확정 및 결산의 승인
4. 기타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회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임원회의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 결정한다.

1. 인구소멸위기 대응에 영향을 주는 국가정책에 대한 논의 및 정책 건의사항
2. 당면한 공동현안에 관한 의견 집약 및 조사 연구사업
3. 사무국의 운영경비, 인건비, 실비보상비와 관련된 사항
4. 기타 협의회 목적 달성을 위하여 임원회의를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협의회 사무국장은 총회 및 임원회의의 내용과 결과를 회의록에 작성하여 관리한다.

- 제12조(의안 및 정족수)** ①회원은 의안을 회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은 임원회의에서 사전 검토를 거쳐 협의회 회의에 상정한다.
 ②의안은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협의회 회원은 회의에서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준수하여야 한다.

제 3 장 사 무 국

제13조(사무국) 협의회 원활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두고 사무장 1인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필요시 시·군·구에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14조(사무국의 업무)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인구감소위기 대응을 위한 법령 제·개정 및 정책 입안 건의

2. 유관기관과의 협의
3. 예산편성 및 집행 등 회계 관리
4. 회의계획 수립, 회의자료 작성 및 통보
5. 기타 협의회와 관련된 사항

제15조(자문위원) ①협의회의 주요 의안에 관한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자문위원은 관련기관·단체의 장 및 관계 전문가 중에서 협의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③협의회 업무와 관련하여 자문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 4 장 재 정 및 기 타

제16조(재원) 협의회의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시 · 군 · 구의 부담금
2. 특별부담금
3.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
4. 기타수입

제17조(부담금) ①부담금은 협의회 총회에서 정하고, 사무국 지정 은행계좌로 수납·관리

하여야 한다.

②특별부담금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 회의에서 심의·의결하고 의결서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요구하여야 한다.

③협의회와 실무협의회, 사무국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협의회 운영

비로 부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협의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협의회에서 결정한 공동사무의 처리 또는 공동사업의 추진에 따른 부담액은 그때마다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8조(사무의 인계) 회장은 임기만료 후 20일 이내에 협의회 운영에 관한 일체의 기록과 경비 및 부담금의 집행 잔액을 차기 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9조(회칙 개정) 협의회 회칙의 개정은 재적회원의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제20조(보칙) 이 회칙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 운영상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칙은 창립총회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기) 제7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인준된 임원의 임기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